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31일
서울특별시

1. 근거법령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3조, 제34조, 제6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, 별표 5

2. 시행목적

-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

3. 시행일자 : 2018. 6. 1.

4. 운행제한 개요

- **시행지역** :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
- **시행기간** :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
- **시행시간** : 06:00 ~ 21:00
- **대상차량** :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. 12. 31.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
 - ① **적용제외**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
 -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
 -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
 - 저공해엔진(혼소엔진을 포함한다)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

② 한시적 적용 보류

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
-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. 12. 31.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.5톤 미만인 경유차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에 따라 ‘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’를 발급받은 경유차
 - ※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, 2019. 2. 28.까지 위 “① 적용제외(저공해조치)”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

5.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

- **단속방법** :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
- **과태료** : 10만원
 - ※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